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9. 12. 27.>

제　　호

[ ] 종교단체
[ ] 법인 법인등자연장지 조성(변경)허가증

명칭		면적
소재지		
대표자	성명(종교단체, 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허가번호)
	주소(종교단체, 법인 주소)	전화번호(종교단체, 법인 전화)
조성(변경)내용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(　　)자연장지 조성(변경)허가증을 발급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　　관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150g/㎡]